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람	기 관 의 장



제 985 호 2015. 12. 17. (목)

조례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843호[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2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844호[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6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845호[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8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846호[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10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847호[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국민건강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3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848호[울산광역시 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18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849호[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1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850호[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3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851호[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6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852호[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8

고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5-262호[도로명주소 고시]	30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5-263호[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32

안내

- 북구 전자공보는 매주 월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전주 금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행정정보→알림마당→북구공보

회람

발행: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기획홍보실(☎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2015년 12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843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구청장의사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구성은 법 제1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한다.

1. 영 제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영 제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구청장은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⑥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재산관리 담당부서장이 된다.

제3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조의2(공유재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한 부서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④ 긴급한 사안이 있는 경우 서면심의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심의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조의3(위원의 제척 등) ①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는 배제되며, 배제된 위원은 회의 개최를 위한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심의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제1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사항

3. 법 제11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및 폐지

제4조제2항제1호 중 “제7조제2항”을 “제7조제3항”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연도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할 수 있다.

③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임은 공유임야대장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1조제1항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8항”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제39조제3호 중 “2003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법률 제7698호, 2005.11.8.)”을 “201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2003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15. 7. 20.)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15. 9. 14.)에 따른 개정내용 반영
- 나. 그 밖의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제출시기 개정
 - (현행)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 제출
 - (개정)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 제출
- 나.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 (현행) 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
 - (개정) 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
- 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추가
 -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변경, 회계간의 재산 무상이관,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
- 라. 일반재산의 수의계약 매각 범위 확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 천 동



2015년 12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844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 중 “3천만원”을 각각 “1천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범위를 확대한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범위 확대(제47조)
 - 【현행】 지방세 체납액 3천만원 이상
 - 【개정】 지방세 체납액 1천만원 이상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 천 동



2015년 12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845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7조(세율)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세율은 법 제34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표준세율 또는 지방세법 세율을 적용하여 상위법령과 일치 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등록면허세 세율의 지방세법 세율 적용
-제5조-

【현행】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하 제1호~제4호 생략

【개정】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7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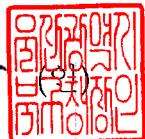
【현행】 법 제34조에 따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하 제1호~제5호 생략

【개정】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세율은 법 제34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 천 동



2015년 12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846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른”으로, “울산광역시북구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으로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
2.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사람
3.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른 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
4.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을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울산광역시북구”를 “울산광역시 북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생업자금”을 “기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5.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운용 수익금

제4조 가 호 외의 부분 중 “가호에서”를 “가 호에서”로, “목적외의”를 “목적 외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자활센터 기능보장 및 자활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제1항 중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연도”을 “해당연도”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기금의 준속기한) 기금의 준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울산광역시북구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생활보장 위원회”를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보장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연도”을 “해당연도”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 ③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맞춤형 복지급여 체계 개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하여 기금 운용의 적정성을 유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 등 개정(제2조, 제3조)

- 정의 및 기금의 재원을 현행법에 맞게 개정

나. 기금의 용도 확대(제4조)

-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 및 자활사업에 필요하나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다. 기금의 존속기한 신설(제5조의2)

- 현행법에 맞추어 기금의 존속기한 규정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 천 동



2015년 12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847호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관계공무원이”로, “조사하게 할”를 “조사할”로 한다.

제6조 중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5조제1항에 따라”로, “보험료를 지사”를 “보험료를 지사”로 한다.

제7조 중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5조제1항에 따라”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허위 또는 기타”를 “거짓이나 그 밖의”로, “환수 하여야”를

“환수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년 월분)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 명부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중부지사장(인)

[별지 제2호서식]

()월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명단

(동)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으로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에서 인용한 상위법 조항 변경에 따른 반영(제1조)
-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조문정비
- 「개인정보법」 개정사항 반영하여 별지 서식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 천 동



2015년 12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848호

울산광역시 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대하여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라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 소득자(主所得者)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 주거로 보기 어려운 곳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의 사용료를 체납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됨으로써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3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12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긴급지원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긴급복지지원법」이 일부 개정(2015.7.1.시행)됨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조례로 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목적(제1조)
-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제2조)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제3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 천 동



2015년 12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849호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 기본법」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 기본법」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 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필요한 경우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를 “기간 만료 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청소년 문화의 집의 공정한 위탁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간 및 수탁기관 선정방법을 구체화한 내용 규정 필요

2. 주요내용

- 가. 수탁기간 및 수탁기관 선정방법의 구체화(제7조제2항)
- 나. 법령 조문 정비 (제1조, 제3조제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 천 동



2015년 12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850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북구아동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를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라 울산
광역시 북구 아동위원회의 운영에”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회복지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

제3조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아동복지법」 제14
조에 따른”으로, “위원회”를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인을”를 “1명을”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전임자의 임기”를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회무를 통할한
다”를 “사무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연임”을 “두 차례만 연임”으로, “전임자의 임기”를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아동위원의 위·해촉)”을 “(아동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로 하고,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위촉한다”를 “위촉 하되,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열의가 있는 사”를 “열의가 있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갖춘 자”를 “갖춘 사람”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해촉을”을 “위촉 해제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요하는 질병 및 기타”를 “필요로 하는 질병 및 그 밖의”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와”를 “각 호와”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1조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아동복지법」 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정비 및 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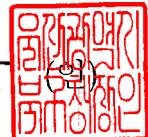
2. 주요내용

- 가. 「아동복지법」 근거조항 변경(제1조, 제4조제1항)
- 나. 연임규정 변경 (제5조)
- 다. 자치단체 위원 위촉규정 반영(제6조제1항)
- 라. 띄어쓰기 등 조문 정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 전 동



2015년 12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851호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중 “수급자”를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맞춤형 복지급여 체계 개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 ('14.12.30)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통합급여가 개별급여로 전환되어 수급자 중 쓰레기봉투 지원대상자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종전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정한 “수급자” 전부에게 쓰레기봉투를 지원하였으나, 앞으로는 현행 쓰레기봉투 지원대상자와 동일한 수준의 급여대상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한하여 지원하고자 함(제18조제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 천 동



2015년 12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852호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맞춤형 복지급여 체계 개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 ('14.12.30)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통합급여가 개별급여로 전환되어 수급자 중 음식물배출수수료 감면대상자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음식물배출수수료 감면대상자 조정(제10조)
 - 현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변경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5 - 262호

도로명주소 고시

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로 45(진장동)외 9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052 241 7583,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12. 17.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순번	총전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비고
1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101B 4L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로 45(진정동)	2015-12-17 명촌동에 소재하는 노로로 법정동 인명촌동의 이름변경하여 노로로 경로를 부여하였다.	2008-02-29	
2	울산광역시 북구 성안동 909	울산광역시 북구 뉴타운길 76(성안동)	2015-12-17 예산시 명인상한나루길을 경로를 사용해서도 르명부여하였다.	2004-08-09	
3	울산광역시 북구 진자천명촌지구 288 5L	울산광역시 북구 진자7길 9(진자동)	2015-12-17 웅지 대이마어체도 사용하는 이름으로 울산시민이면누구나 전숙한이름이므로 도로 명을 부여 하였다.	2004-12-27	
4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288 5,1L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7길 9-1(진정동)	2015-12-17 웅지 대이마어체도 사용하는 이름으로 울산시민이면누구나 전숙한이름이므로 도로 명을 부여 하였다.	2004-12-27	
5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288 5,2L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7길 9-3(진정동)	2015-12-17 웅지 대이마어체도 사용하는 이름으로 울산시민이면누구나 전숙한이름이므로 도로 명을 부여 하였다.	2004-12-27	
6	울산광역시 북구 해봉동 1442-13	울산광역시 북구 해동로 44-1(해봉동)	2015-12-1 / 지연부탁 명장을 사용해서도 르명부여하였다.	2010-04-21	
7	울산광역시 북구 경동신이마지구 3B 2-1L	울산광역시 북구 산을 12길 48(산이동)	2015-12-17 산을 마을 명장을 사용 하면서도 도로 명을 부여하였다.	2014-05-07	지번 첨부 3521-362-11
8	울산광역시 북구 경동신이마지구 3B 2-1L	울산광역시 북구 경자7길 15(경자동)	2015-12-17 행정구역 인정지동에 위치하여도 르명을 부여하였다.	2004-08-09	
9	울산광역시 북구 중신동 839-2	울산광역시 북구 전곡재7길 47(중신동)	2015-12-1 / 전곡동의 기순자(연마)을 전자(전자)판자(판자) 선마를 해위치하여도 르명을 부여하였다.	2004-08-09	
10	울산광역시 북구 엠포동 87-15	울산광역시 북구 서창터4길 9(엄포동)	2015-12-17 신현대가산포개항 당시 창터(소금파는 창)로 사용하여 창터로 명부여하였다.	2004-01-05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5 - 263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우리구 건물의 멀실 등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로 45(진장동)외 1건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불 임 참 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052-241-7583,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12. 17.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시유	비고
1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로 45(진장동)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사거리 101B 4L	2015-12-17	건축물 멸실	
2	울산광역시 북구 서정테4길 11-1(업포동)	울산광역시 북구 업포동 87-15	2015-12-17	건축물 멸실	